

제2683호
2019. 9. 27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
전화: 3396-495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조 례

제1468호 :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조	례
---	---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9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
●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68호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4호 중 ‘입법사항’을 ‘입법사항 등’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‘3명 이내’를 ‘6명 이내’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직무) ①입법자문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.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4. 서울특별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운영 및 의안심사·처리,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입법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. 제3조(정원) 입법자문위원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.	제2조(직무) ①(현행과 같음) 1.(현행과 같음) 2.(현행과 같음) 3.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입법사항 등의 자문 ②(현행과 같음) 제3조 ----- 6명 이내 -----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 중구의회회의 조례 및 규칙의 제·개정 등 입법 사항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효과적인 법률검토를 위하여 입법자문위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2조(직무) 부분 중 ‘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’을 ‘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 등’으로 개정
- 제3조(정원) 부분 중 정원을 ‘3명이내’를 ‘6명이내’로 개정